

# 提案制度의 由來와 運用

## <VI>

### — 美國의 職務發明制度를 中心으로 —

#### 11. 大統領命令 第10096號의 運用에 대한 行政命令 第5號 內容(1951. 4. 26) <1>

**第1條 目的** 本命令의 目的은 政府 被備者에 의하여 이루어진 發明의 國內權利에 대한 政府의 統一의 特許政策管理와 그 정책을 具 現實施行하기 위한 基準 및 規則을 規定하는데 있다.

**第2條 權限** 통일적인 特許정책을 施行하는 權限은 1950年 1月23日字의 大統領命令 第10096號에 규정되어 있다.

**第3條 適用範圍** 本 명령은 1950년 1월23일 이후에 政府비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發明 및 그에 관하여 行한 모든 行爲에 適用된다.

**第4條 定義** 1. 本 명령에 使用되는 政府機關 (Government agency)이란 用語는 모든 行政 府(any executive department) 또는 行政部內의 獨立된 기관(독립된 管理委員會, 合衆國에 의하여 完全히 所有되어 있는 財團 및 Smithsonian Institution을 포함함)을 뜻하나 原子力委員會는 포함되지 않는다.

2. 本 명령에 사용되는 政府비용자라는 용어는 別途로 會長에 의하여 承認된 것을 除外하고 모든 非常勤 顧問 또는 費用자를 포함한 政府기관 的 公務員 또는 費用자, 文官, 武官을 뜻한다.

3. 本 명령에 사용되는 發明이란 용어는 합衆國의 特許法下에서 특허가 許與되거나 또는 허여될 듯한 모든 技術, 機械, 製造物, 意匠, 合成物 또는 그들의 모든 새롭고 有用한 改良, 또는 各種 植物을 뜻한다.

4. 本 명령에서 會長(Chairman)이란 용어는 國家公務員發明特許審査會의 회장을 뜻한다.

**第5條 發明의 決定** 政府 자기기관은 研究開發 또는 機關內의 다른 活動의 結果가 대통령명령 제10096호 範圍內의 發明의 構成與否를 결정한다.

**第6條 發明에 관한 權利의 決定** 1. 이 명령에 定해진 회장에 의한 再審査를 條件으로 각 정부기관은 當該機關의 行政的 權限下에 있는 동안에 政府 비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發明의 各權利가 政府의 所有가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

2. 다음 기준은 本 명령의 규정에 따라 각 發明의 權利가 政府의 것이냐의 여부 결정때에 適用된다.

① 政府는 가) 勤務時間 중

나) 政府의 施設, 設備, 資材, 資金, 情報 또는 다른 政府비용자에 의하여 公的 勤務下에 시간, 勞力의 提供으로 되거나

다) 發明者의 公務와 直接關係가 있거나 公무의 結果 이룩된 發明의 완전한 國家의 權利, 權限(title) 및 이익을 取得한다.

② 위의 ①에서 指摘한 1~2 이상의 기준에 따라 認定됨에 있어 發明에 대한 政府의 貢獻이 그 發明의 완전한 國內權利, 權限 및 이익에 대해서 政府의 讓渡에 의 요구를 正當化함에 있어 衡平上 不充分할 경우(회장이 위의 ①下에 政府가 같은 方法으로 權利가 취득된다고 했을 경우에도)나 완전한 국내權利, 權限, 이익을 취득할 만큼 發明에 關心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發明에 대한 權限을 費用자에 留保시킬 수가 있다. 다만 政府의 모든 목적때문에 實施權의 設定權利를 保有하는 發明에 대하여는 非獨占의 取消不能이며 無償의 실시권을 政府에 留保하는 것으로 한다. 즉 위의 유보는 조건에 따라 그 發明에

서 생기는 국내 또는 國外的 모든 특허에 적용된다.

③ 위의 ①, ②의 규정을 적용함에는 어느 특별한 발명에의 關聯事實과 情況에 依據하여 가) 기술, 기제, 제조 또는 合成物을 발명하고 개량 또는 完成하도록

나) 研究, 開發 또는 兩者의 作業을 指導하도록

다) 政府出資 또는 정부지도의 연구, 개발 혹은 그 양자의 作業을 監督, 管理, 調整하도록

라) 前記의 作業에 從事하고 있는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기관이나 個人 사이에 連絡이 되도록 雇傭되어 있거나 명령된 被傭者에 의하여 이룩된 발명은 위의 ①의 규정에 포함되어 다른 모든 피용자에 의하여 이룩된 발명은 위의 ②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위의 어느 추정이 특별한 발명이 되는 조건에 따른 사실이나 正황에 의하여 反證될지도 모른다 해도 위의 추정은 이들의 발명이 다음의 ④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라 推定될 수 없다.

④ 政府가 가) 위의 ①의 국내권리, 권원,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또는

나) 위 ②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實施權을 賦與한다는 조건으로 발명에 관한 非獨占的, 取消不能, 無償의 실시권을 유보하지 않을 경우는 法律에 따라 발명에 관한 완전한 권리, 권원, 이익을 정부피용자에 유보하는 것으로 한다.

3. 政府의 어느 기관이 本條 2의 ② 또는 ④에 따라 발명의 권원을 피용자에 유보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기관은 國家의 安保, 일반국민의 건강 안전 또는 福祉를 考慮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前記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다음 발명에 관한 情報를 회장에 제출한다.

①재심사가 충분히 되도록 詳細한 발명의 記述

②발명자의 姓名과 雇傭上의 身分

③기관의 결정과 그 이유에 대한 내용

本條 2의 ②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의 報告는

본 명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抗訴提起의 受理期間 後에 行하든가 또는 피용자가 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를 默認한다면 전기의 기간 전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회장은 곧 그 정부기관의 결정을 재심사하고 정부기관의 결정보다 큰 권리를 정부에 대하여 부여하는 結論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한 訴願에는 위의 결론을 받은 후 3個月 이내 또는 회장이 정당한 이유에 따라 定할 수 있는 기간보다 긴 기간 안에 발명자의 권리를 회장에 委任한다는 조건으로 제출시켜 회장의 본건에 관한 결정은 最終的인 것이 된다. 이에 관련된 소원의 復寫는 일정 기간 안에 정부기관과 피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第7條 被傭者에 의한 抗訴 1. 본 명령 제6조

의 2의 ①이나 ②에 따른 정부기관의 결정에 不滿을 갖는 정부피용자는 전기의 결정통지를 받은 다음 30日 이내 또는 회장이 피용자에게 有利한 이유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보다 긴 기간안에 회장앞으로 1通의 抗訴書와 當該政府機關에 1통의 항소서 寫本을 제출함으로써 기관결정의 재심사를 確保할 수가 있다.

2. 本條 1에 따라 항소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결정한 정부기관은 국가의 안전, 일반국민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해 고려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서의 제출과 동시에 항소서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文書로서 회장에 제출한다.

①재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발명의 기술

②발명자의 성명, 발명자의 고용상의 신분, 발명할 당시의 발명자의 公的義務에 관한 詳述

③論爭의 本質에 관한 상술, 기관결정의 사본,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訴訟의 概要, 또는 要旨의 사본, 정부에 의해 검토된 陳述書나 證據書의 사본 및 다른 적당한 資料의 사본,

3. 이 條文에 따른 항소에 관한 회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계속> (C記)